

2022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INDEX

2022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자료

01. 고용관리책임자의 개요

- (1) 고용관리책임자의 의의 및 역할
- (2)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02. 노무관리 업무

- (1) 건설근로자 모집·고용·배치
- (2) 편의시설 설치·이용 등

03. 퇴직공제 관련 업무

- (1) 퇴직공제제도 개요
- (2) 퇴직공제 업무처리
- (3) 전자카드제/기능등급제

04. 고용보험 관련 업무

- (1)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05. 교육훈련 관련 업무

- (1) 기능향상 지원사업 개요
- (2)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



1. 고용관리책임자의 개요

- (1) 고용관리책임자의 의의 및 역할
- (2)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고용관리책임자의 의의 및 역할

고용관리책임자 의의

-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 별로 지정된 자

고용관리책임자 역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3조의2)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9.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신고방법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건설근로자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일용근로자가 아닌 본사 소속 직원이나 현장의 직원

고용관리 책임자 신고(건설근로자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
-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방법 : 고용EDI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근로내용확인 신고 > 건설 사업장 추가 정보 란에 고용관리 책임자 정보 기재

➤ 건설 사업장 추가 정보

공사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input type="text"/>
고용관리 책임자 직위	<input type="text"/>
근무지	<input type="radio"/> 본사 <input type="radio"/> 해당 사업장(현장) <input type="radio"/> 다른 사업장(현장)
직무내용	<input type="checkbox"/> 인사노무 <input type="checkbox"/> 회계·세무경리 <input type="checkbox"/> 경영관리 <input type="checkbox"/> 홍보·영업 <input type="checkbox"/> 기술기능 <input type="checkbox"/> 기타



2. 노무관리 업무

- (1) 건설근로자 모집·고용·배치
- (2) 편의시설 설치·이용 등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 모집 · 고용 · 배치 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 고용노동부 :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용 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건설현장 집중 감시 방침' 공지

모집 시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주요 점검 항목)

채용광고 내용·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 절차법 제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사례] 채용 공고보다 더 낮은 연봉 제시, 다른 근무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 강요 등 금지
(채용 절차법 제4조의 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금품 제공 및 수수 등을 하는 행위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절차법 제4조의3)

-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구직자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 절차법 제9조)

- 채용 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 면접관 인건비, 채용 광고료, 필기 또는 실기시험 실시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채용대행, 헤드헌팅 업체 수수료 등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 절차법 제11조)

-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서류 반환 요구하면 채용서류 반환(시정명령 →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 반환, 서류 보관 및 파기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직자들에게 고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절차법 외 건설 근로자 모집 시 유의사항

모집 시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주요 점검 항목)

근로자파견 금지
(파견법 제5조제3항)

-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근로자 파견과 파견근로자 사용이 절대 금지.
-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청과 하청 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즉,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 내지 용역계약인 경우에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불법 파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파견법 제43조), 양벌규정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에 제한이 있음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3년 간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므로 유의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여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여부

- F-2 (거주) :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활동에 제한 없음
- F-5 (영주) : 취업 활동에 제한 없음
- F-6 (결혼이민) : 취업 활동에 제한 없음
- F-4 (재외동포) : 단순 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 불가능 (기능공/특수공으로 채용하여야 함)
- H-2 (방문취업) :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고용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 고용
- E-9 (비전문취업) :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고용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 계약

- 입사 당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필수 기재사항

[모든 근로자]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② 소정근로시간
- ③ 주휴일
- ④ 연차유급휴가
-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기숙 시)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
-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③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④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CASE



근로자 A.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신고

→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건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 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 Tip

근로계약서 (일용직)

제1조 당사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회사명(갑)</td> <td style="width: 40%;"></td> <td style="width: 20%;">성명(을)</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주소</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대표자</td> <td></td> <td>연락처</td> <td></td> </tr> </table>	회사명(갑)		성명(을)		주소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회사명(갑)		성명(을)											
주소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제2조 근로 계약기간	<p>① 계약 기간은 2022. 6. 1. 부터 근로하며,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p> <p>②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당일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을에게 직접 계속근로를 요청할 경우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갑으로부터 다음 날 근로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 등 계약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종료된다.</p> <p>③ 단, 동조 제2항의 경우에도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 변경, 공사 도급계약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동의자 : (인)</p>												
제3조 근로장소· 업무내용	<p>① 근무 장소:</p> <p>② 업무 내용:</p> <p>③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p>												
제4조 근로·휴게시간	<p>① 을의 근로일 및 근로,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근로일</th> <th style="width: 25%;">시업시간</th> <th style="width: 25%;">종업시간</th> <th style="width: 25%;">휴게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② 갑은 업무상 필요시 을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한다. 단,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시간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을이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인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자 : (인)</p>	근로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tip]

- 근로자의 공종에 맞는 기간과 1일 근로형태의 일용근로자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부당해고 등 문제 발생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Tip

제5조 휴일	<p>①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p> <p>② 휴일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 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p> <p>③ 단, 동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된다.</p>																										
제6조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금	<p>① 을의 임금은 일당 120,000 원으로 하며, 일당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312 679 1742 911"> <thead> <tr> <th rowspan="2">일급</th> <th>구성항목</th> <th>금액</th> <th colspan="2">기준 시간</th> <th rowspan="2">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일급</td> <td>86,486</td> <td>8</td> <td>시간</td> <td></td> </tr> <tr> <td>유급주휴수당</td> <td>17,297</td> <td>1.6</td> <td>시간</td> <td></td> </tr> <tr> <td>연장 근로수당</td> <td>16,216</td> <td>1.5</td> <td>시간</td> <td></td> </tr> <tr> <td>합계</td> <td>120,000</td> <td>11.1</td> <td>시간</td> <td></td> </tr> </tbody> </table> <p>② 을은 포괄일당제 방식에 근거하여,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포괄일급 내지 포괄월급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자: 동의(인) / 반대(인)</div> </p> <p>③ 을의 임금은 매일 근로종료 후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이 제1조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포괄 일당 x 출역 일수] 로 산정하여, 매월 ()일에 정기지급한다.</p> <p>④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함에 동의한다.</p>	일급	구성항목	금액	기준 시간		비고	기본일급	86,486	8	시간		유급주휴수당	17,297	1.6	시간		연장 근로수당	16,216	1.5	시간		합계	120,000	11.1	시간	
일급	구성항목		금액	기준 시간		비고																					
	기본일급	86,486	8	시간																							
유급주휴수당	17,297	1.6	시간																								
연장 근로수당	16,216	1.5	시간																								
합계	120,000	11.1	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tip]

- 일급에 법정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는 경우, 각 수당의 명칭과 시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 Tip

근로 계약서												
제1조 당사자	회사명(갑)		성명(을)									
	주 소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제2조 근로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2022. 1. 1. ~ 기간의 정함 없음으로 한다.											
제3조 근로장소· 업무내용	① 근무 장소: ② 업무 내용: ③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u>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u>											
제4조 근로·휴게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단,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u>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근로일</th> <th style="width: 25%;">시업시간</th> <th style="width: 25%;">종업시간</th> <th style="width: 35%;">휴게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월~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 ~ 13:00</td> </tr> </tbody> </table> ② 갑은 업무상 필요시 을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한다. 단,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시간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u>을이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인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u> 동의자 : (인)				근로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월~금	9:00	18:00	12:00 ~ 13:00
근로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월~금	9:00	18:00	12:00 ~ 13:00									
제5조 휴일	①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휴일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 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6조 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③ 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일 이전에 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tip]

- 실무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시간 등을 임의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 발생
-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둔 경우, 회사측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정당성을 확보하기 용이함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회사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일근로 시킬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건설 근로자 배치 시 유의사항

배치 전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건설 기술인 현장 배치 (건설법 제40조)

점검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과태료 등)
건설 현장에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조치)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준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2억원 이하의 과징금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이상 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자의 승낙 여부 확인	- 현장 배치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조치) 해당 건설업자등록관청에 통보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

편의시설 설치·이용 등(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규모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미조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관련 Q&A

Q

편의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의무는 원청에만 있나요?

A

원청, 하청 모두 해당됩니다.

Q

편의시설 관련해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A

건설현장은 근로감독 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편의시설 조치, 퇴직공제 신고 등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까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감독 시 편의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Q

편의시설 설치·이용에 관하여 하청도 현장 단위로 해당 사업주가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청이 설치했을 때 하청 근로자들도 모두 함께 사용 가능한가요?

A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청과 하청 간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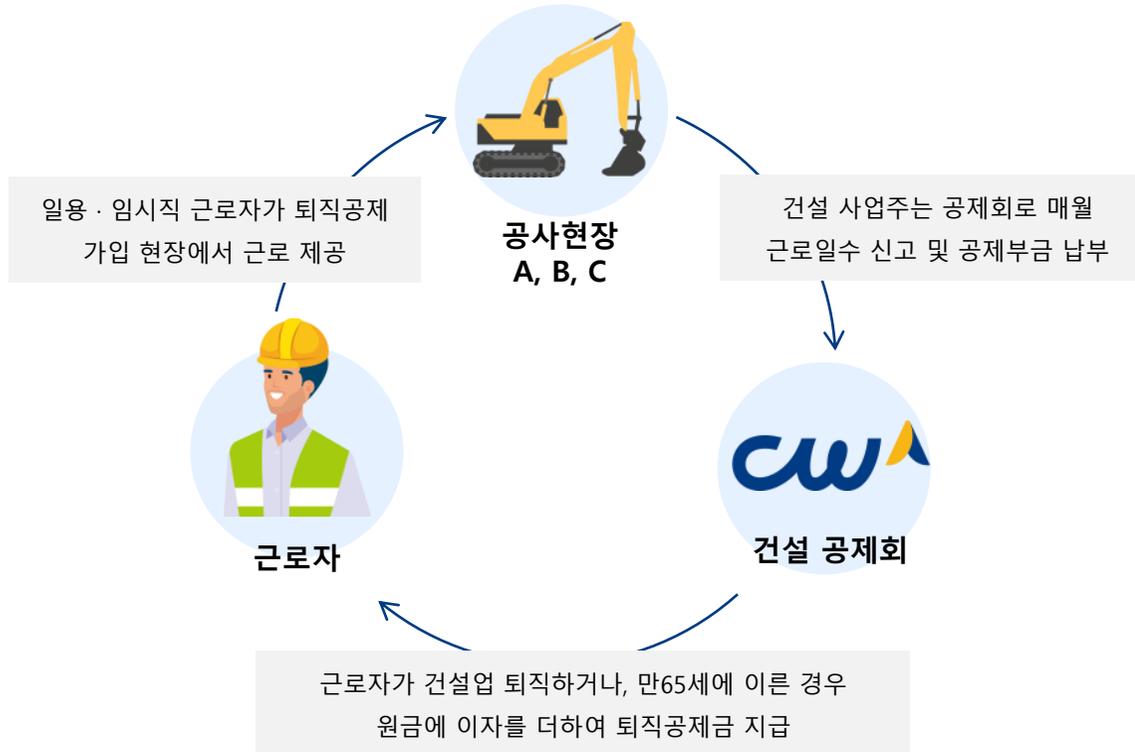


3. 퇴직공제 관련 업무

- (1) 퇴직공제제도 개요
- (2) 퇴직공제 업무처리
-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4)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이를 적립하여 관리하고, 향후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기준

적용 공사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②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 ※ 해당 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 사업주가 가입 가능

당연가입

- 퇴직공제 가입 의무가 있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건설공사**

임의가입

- 공사예정금액 또는 호(실)수 미달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지만,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되는 건설사업주***는 사업주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

퇴직공제 가입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및 공사에정금액의 개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연혁]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구분		98. 1. 1.	01. 8. 25.	04. 1. 1.	08. 1. 1.	10. 9. 30.	20. 9. 8.
공사 예정 금액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5억	3억	1억
	민자	해당 없음					
	민간	해당 없음				100억	50억
공동주택		500호		300호	200호		
오피스텔, 주상복합		해당 없음					

2.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구분		08. 1. 28.	11. 10. 26.	20. 5. 27.
공사 예정 금액	공공	5억	3억	1억
	민자	해당 없음		50억

[공사예정금액]

-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 * 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방식, 계약형태 및 실제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간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등 계약단가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도급 받을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으로 보아야 함



퇴직공제 가입 관련 Q&A

Q

매건 작업지시 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인가요?

A

발주공사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됩니다.

Q

발주 당시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인가요?

A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인가요?

A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공사라도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됩니다.



공제부금일액 적용기준

[공제부금일액 적용기준]

적용기준	공제부금일액	비고
2020. 5. 27. ~ 현재	6,500원	입찰 공고일 또는 도급 계약일 기준
2018. 1. 1. ~ 2020. 5. 26.	5,000원	
2012. 4. 1. ~ 2017. 12. 31.	4,200원	착공일 기준
2008. 1. 1. ~ 2012. 3. 31.	4,100원	
2007. 1. 1. ~ 2007. 12. 31.	3,100원	
제도시행 ~ 2006. 12. 31.	2,100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산정]

당월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 전월 투입된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 누계 x 공제부금일액



퇴직공제 적용 대상 범위



적용 대상자 (피공제자)

- 일용직 근로자
- 임시직(1년 미만) 용역 근로자
- 장비운전원 (임시, 일용)
- 일용직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1년 미만 계약)
- 그 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국적, 나이, 성별, 소속(하수급, 파견, 용역 포함), 직종, 4대 보험 가입여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임금 지급 형태 등과 관계없이 모두 퇴직공제 근로 내역 신고 대상자에 해당



적용 제외 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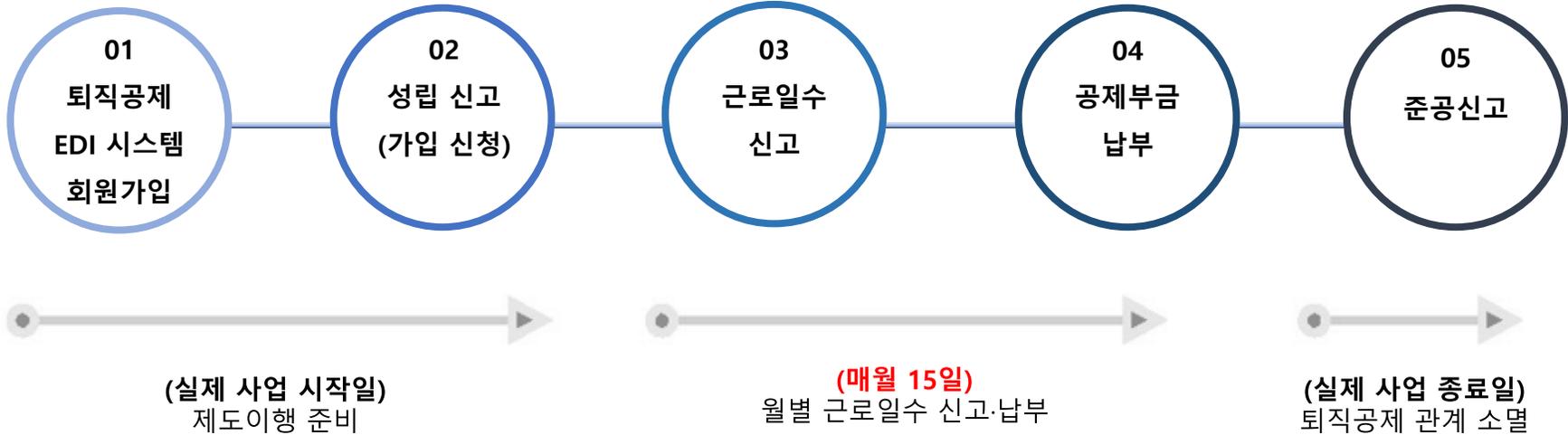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퇴직공제 업무처리 개요

업무처리 개요

퇴직공제 EDI 시스템(wedi.cw.or.kr)에서 착공에 따른 성립신고와 근로일수 신고·납부,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신고까지 모든 퇴직공제 관련 업무 수행 가능





퇴직공제 가입(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퇴직공제 가입신청)

가입 종류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당연가입	원수급인	사업시작일 (실 착공일) 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공제회에 관련서류 제출 (EDI시스템, 팩스 등 활용) ①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서 1부 ②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③ 도급금액 산출 명세서(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부금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임의가입	사업주	공사 중 언제라도	퇴직공제 가입신청	공제회에 관련서류 제출 (EDI시스템, 팩스 등 활용) ①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1부 ②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③ 도급금액 산출 명세서(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부금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가입 의무 위반 시 : 발주기관 협조를 통한 직권 성립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가 반영 의무 위반 시 : 원가 반영 요청 공문 발송(사업주, 발주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퇴직공제부금비)이 물량명세서(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소요비용 산정 후 변경내역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함.



근로자에 대한 고지 : 피공제자의 범위 및 퇴직공제금 지급방법 등 퇴직공제와 관련된 사항

고지내용

가입 사업장 표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매월 「건설근로자별공제부금 납부명세서」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일용직(일용직건설근로자 - 국적, 소속, 직종,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
- 관련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

퇴직공제금 지급

- 청구조건 1) 적립월수 2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한 60세에도 불문 할 경우 (1995 퇴직시용 54고 2) 적립월수 26개월이었던 근로자가 한 60세에 도달한 경우 3) 근로자가 사 망한 경우
- 퇴직사유 부상·결핵/립업종 이외/건설업 상용직 취업/새로운 가입 시작 등
- 지급금액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

건설근로자별 공제 부금 납부명세서대장

근로년도 : 2022년도 전체근로자

(2022년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서대장

공제가입번호		21-06101-		업 체 명													
공 사 명																	
NO	성명	생년월일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62****	7	0	7	0	0	0	0	0	0	0	0	0	0		
2		72****	12	7	5	0	0	0	0	0	0	0	0	0	0		
3		70****	7	0	7	0	0	0	0	0	0	0	0	0	0		
4		70****	7	0	7	0	0	0	0	0	0	0	0	0	0		
5		57****	7	0	7	0	0	0	0	0	0	0	0	0	0		
6		57****	7	0	7	0	0	0	0	0	0	0	0	0	0		
7		68****	7	0	7	0	0	0	0	0	0	0	0	0	0		
8		56****	6	0	6	0	0	0	0	0	0	0	0	0	0		
9		82****	7	0	7	0	0	0	0	0	0	0	0	0	0		
10		53****	7	0	7	0	0	0	0	0	0	0	0	0	0		
11		63****	7	0	7	0	0	0	0	0	0	0	0	0	0		
12		58****	6	6	0	0	0	0	0	0	0	0	0	0	0		
13		87****	7	7	0	0	0	0	0	0	0	0	0	0	0		
14		59****	7	0	7	0	0	0	0	0	0	0	0	0	0		
15	...	62****	7	0	7	0	0	0	0	0	0	0	0	0	0		

※ EDI에서 현상 게시용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 명세서대장 출력



근로내역 신고

근로내역 신고

-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전월 발생한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의 근로 내역을 **매월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 부금을 납부해야 함
-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구분	계	근로자 A의 출력현황									
출력일수	10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출력공수	12.5공수	1.0	1.0	1.5	1.5	1.5	1.5	1.5	0.5	1.0	1.5
퇴직공제 신고일수	12일	- (원칙)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신고하되, 당사자 사이의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 - (소수점 공수 처리) 출력공수에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림하고 신고하되, 버린 공수는 다음 달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때에 합산하여 신고 - (참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휴일(법정·약정 및 유급·무급휴일 포함) 및 휴가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약정 유급휴일을 근로일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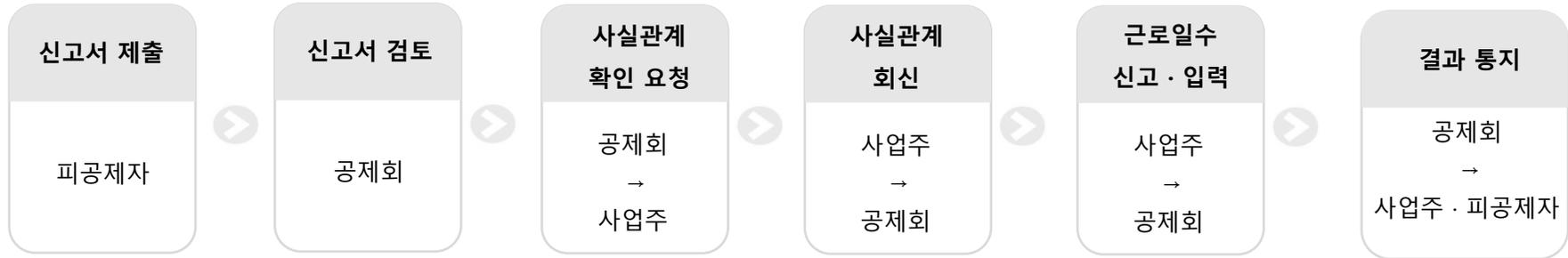


근로내역 신고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제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피공제자가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
-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직접 신고 절차 및 방법]



[제도 관련 유의사항]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20.5.27.)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부터 적용**
- 직접 신고의 대상이 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준공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 내역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공제회에서 통지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



공제부금 납부

공제부금 납부 방식

납부 방식

1. 납부전용(가상)계좌 납부

- (개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공제부금 납부
- (납부은행) 하나·국민·신한·농협·우리은행 중 택 1
- (계좌 확인방법) 퇴직공제 EDI 시스템 → 문서출력 →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 → 출력
- (수납확인) 납부 당일 1~2시간 이후 확인 가능

2. 인터넷 지로 납부

- (개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공제회 지로번호) 6341983
- (수납확인) 납부일로부터 2~3영업일 이후 확인 가능

3. 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 (개요) 공제회가 발행한 MICR 지로장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또는 창구에서 납부
- (수납확인) 납부일로부터 2~3영업일 이후 확인 가능

화면 예시

※ (인터넷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화면(예시))

청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로번호	6341983
납부금액	납부할 공제부금액 원	납부자명	상호명
납부자 확인번호	공제가입번호(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처리불가)		
기타 납부자정보	전화번호 등 기재		(전화번호 입력)
년월(회)차 (숫자만 4자리 입력)	근로내역·신고·연월 (예: '11년12월 → '1112')		

※ "지로통지서" 화면상 빈칸 내용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 "납부계좌번호" 선택후 "납부" 버튼 클릭 및 영수증 확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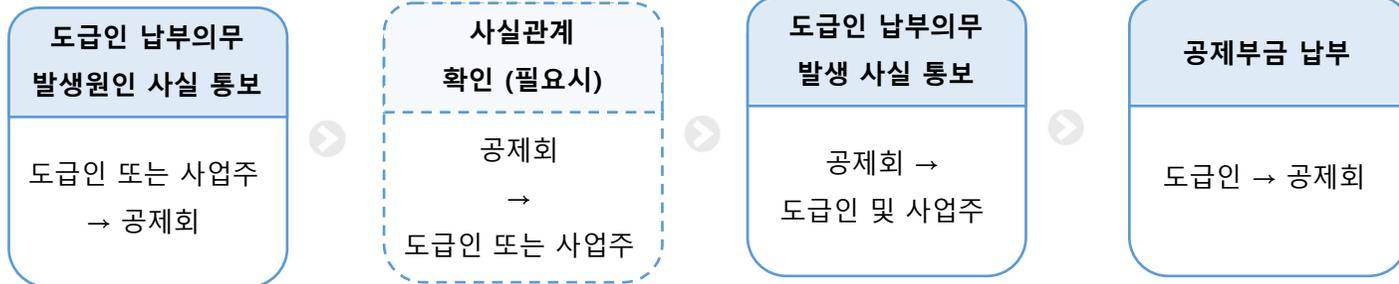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
-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17조

[납부 특례 사유]

- ①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기로 사업주와 서면 합의한 경우
- ② 사업주가 파산·회생·공동관리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 납부특례 절차 및 방법]



[제도 관련 유의사항]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20.5.27.)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부터 적용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관련 벌칙규정

퇴직공제 신고·납부 관련 벌칙규정 등

- 사업주 근로내역 미신고 시 근로자가 누락 근로일수에 따른 근로일수 직접신고 가능(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제 참고)
- 공제부금 장기미납 시 공제회에서 민사소송(지급명령, 채권압류 등) 진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준공신고 및 공제부금 정산

준공신고 및 공제부금 정산

-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가반영액(직접노무비 x 2.3%) 내에서 발주기관과 정산
- 공제회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퇴직공제 관계 종료

준공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퇴직공제 EDI 시스템(온라인) 또는 팩스 등(오프라인)
- (구비서류) 준공신고서 1부, 준공 관련 증빙서류 1부(필요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서식)

※ (출력경로) 퇴직공제 EDI시스템 → 문서출력 →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등을 위해 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건설근로자

금융기관을 통해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현장 내 설치된 단말기에
직접 출퇴근 내역을 기록



사업주

현장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사용을 관리하며,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기록한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납부



전자신고방식을 통한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실현과 퇴직공제 활성화를 위한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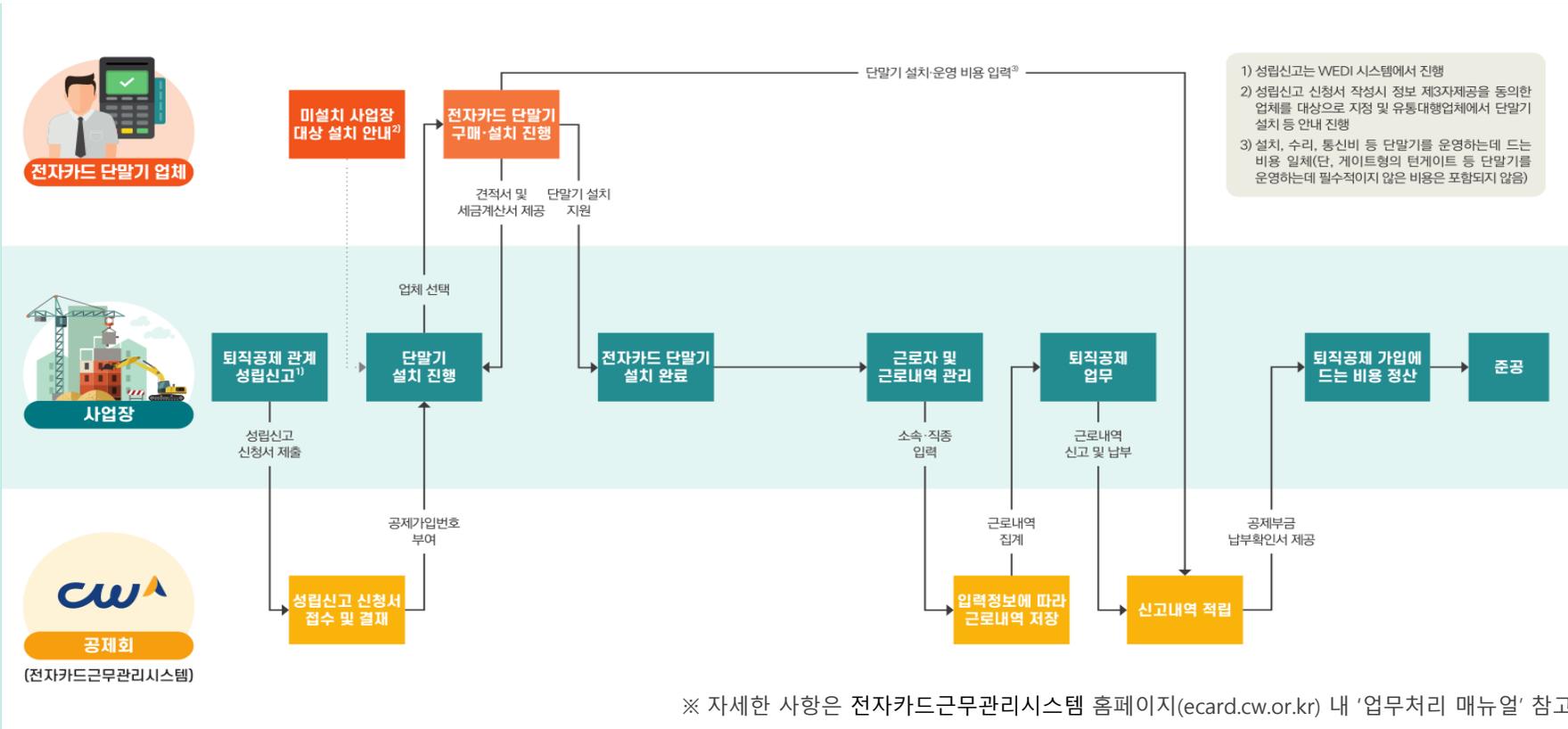
퇴직공제 신고 뿐만 아니라 임금·안전·자격·경력관리 등 건설근로자 일자리 및 건설산업 관련 다양한 정책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음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 착공 및 성립신고 → 전자카드 현장등록 → 단말기 설치 운영 →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 근로일수 확인 및 퇴직공제 신고 → 준공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범위 등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단계적 확대 추진)

- 전자카드제 대상 사업주는 퇴직공제 관계성립 신고 및 전자카드제를 적용해야 함
- 2022년 7월 1일부터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제31188호, '20.11.24.)]

구분	'20.11.27.	'22.7.1.	'24.1.1.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무

- 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제5항]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사업주는 인력 투입 시 반드시 전자카드 발급·소지 여부 확인 필요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사업주(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 '원수급인')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에 포함하여 **공사원가(직접노무비의 2.3%이내)에 반영**하도록 함

[참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 2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도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도

- 지정시험을 통해 공제회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단말기임이 확인되면,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
- 건설현장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단말기 생산사업자 확보 및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사업주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 총 4개의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업체*가 4가지 유형의 단말기 공급 중('22.3월 기준) * (주)휴먼인텍, (주)유니온커뮤니티, 비전아이(주), (주)두올테크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게이트형





하나로 전자카드란?

하나로 전자카드

- (금융형 카드) 금융실명제에 따라 발급되므로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개인정보 파악 및 양도·매매 등 부정 사용 방지가 가능하며,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금 결제 기능과 캐시백·적립 등 우대 혜택을 제공
- (발급 기관) 사업주 및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위탁발급기관(하나은행 및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발급

[하나은행 - 하나카드]



[우체국 카드]





전자카드 발급 방법

전자카드 발급 방법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하나은행 및 우체국
신청 방법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신청 ※ 즉시 발급되며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근로자 신청 가능
	비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URL 접속을 통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 : http://m.hanacard.co.kr/mobile_web/partner/electronic - 우체국 : http://m.epostbank.kr/pbcd0135.screen QR코드를 통한 발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하나은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우체국]</p>  </div> </div> <p>※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신청 가능하며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신청 불가</p>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근로자 : 신분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p>* H-2 비자 소지자 :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수</p> <p>** 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필수</p>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은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 선택, (우체국)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한 번 발급 받은 카드로 전체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에서 사용가능



전자카드 모바일 운영체계

전자카드 모바일 운영체계

- 근로자 출퇴근 기록 편의성 제고 및 현장 범위가 넓은 토목현장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APP) 및 모바일 리더기 개발
- (근로자용 APP) 근로자 본인의 스마트 기기(휴대폰 등)에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출퇴근 신고 및 근로내역 조회 가능
- (현장관리자용 APP)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사업주의 스마트기기에 APP을 설치하고 모바일 리더기를 연결하면, 단말기로 사용 가능함.

근로자용 App



모바일 리더기



운영절차



※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가능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

- 개념 : 건설기능인에게 기능등급(초·중·고·특급)을 부여하여 신규인력 진입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경력관리 제도
- 적용 대상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건설 생산물을 만드는 근로자로 일용직과 기능인력 출신의 상용직 관리자를 포함
- 통합 경력 산출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을 근로일수로 환산해 통합경력 산출
- 기능 등급 부여 :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성되며, 누적 총 환산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3년, 9년, 21년이 되었을 때 상위등급 승급 가능



- ▶ 현장경력 : 퇴직공제 신고일수 + 고용보험 신고일수
- ▶ 교육훈련 : 건설전문인력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건설 분야의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사항
- ▶ 자격 : 국가기술자격,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의 인정기능사 자격
- ▶ 포상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민간기능경기대회 등의 포상



기능 등급 시행 직종(49개)

기능등급 시행 직종표

※ 어둡게 표시된 직종은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토공	11	건축	21	패널조립	31	건축배관	41	일반기계	51	플랜트용접
2	포장	12	방수	22	도배	32	보일러	42	잠수	52	플랜트특수용접
3	궤도	13	코킹	23	유리	33	상하수도배관	43	문화재시공	53	송변전
4	보링	14	타일	24	수장	34	플랜트기계설비	44	일반기계설비	54	배전
5	준설	15	석공	25	보온	35	플랜트전기설비	45	제관	55	내선전기
6	측량	16	도장	26	플랜트보온	36	플랜트계측설비	46	플랜트제관	56	외선전기
7	형틀목공	17	철근	27	지붕	37	플랜트배관	47	덕트	57	철도신호제어
8	건축목공	18	콘크리트	28	철거	38	조경	48	플랜트덕트	58	정보통신
9	조적	19	창호	29	강구조	39	벌목	49	일반용접	59	발파
10	미장	20	비계	30	건축기계설비	40	건설기계	50	일반특수용접	60	안전관리

[사업주 유의사항]

-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근로내역 신고 시 **공제회 직종표**를 참고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직종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기대효과

- ✓ 근로자 :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및 직업전망 제시 가능
- ✓ 사업주 : 숙련인력 정보 확보를 통해 시공품질 향상
- ✓ 건설산업 : 청년층 진입으로 고령화 해소 및 숙련인력 수급전망 가능



4. 고용보험 관련 업무

(1)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



피보험자력에 관한 신고 등

피보험자력 취득 · 상실신고 등 (고용보험법 제15조)

01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력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2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3 사업주가 피보험자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 단, 근로자가 신고기한 이전이라도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각 사유별 자격 취득일

-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 : **근로계약 상의 근로개시일**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변경된 근로계약의 근로개시일**
-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 :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의 경우)

- 취득일 : **자격 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신고

각 사유별 자격상실일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날**
예) 2022.4.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2022.5.1.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 **당해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 : **탈퇴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이직확인서 발급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고용보험법 제42조, 제118조, 시행규칙 제82조의2 등)
-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하며,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함
-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근로내용 확인신고(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근로 특성상 **입·이직이 빈번**하여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피보험자격 관리가 어려움**
- 이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실제 근로한 날 및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대하여 신고(유급휴가일 등 포함)
-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을 받은 하수급인 포함)을 사업주로 보아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 부과**



5. 교육훈련 관련 업무

- (1) 기능향상지원사업 개요
- (2)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



기능향상지원사업과 건설업 청년인력 양성 훈련과정

기능향상지원사업	고용단절이 빈번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종별 무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훈련기관, 훈련과정 등 변동 가능
훈련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건설현장 근무경력자(고용보험, 퇴직공제 등) 또는 건설 직종 구직 등록자 등 ※ 심화과정 : 기본과정 2회 이상, 퇴직공제적립일 120일 이상인 자 등
훈련 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위탁훈련기관(38개소)
훈련 과정	조적, 미장, 타일, 방수, 배관, 도장, 건축 목공(일반·형틀·한옥), 용접(일반·플랜트) 등 건축시공 12개 직종
훈련 시간	주간 : 20일(1일 6시간), 야간 : 40일(1일 3시간)
지원내용/참여 문의	훈련비 무료, 훈련생에게 훈련 장려금 지원/건설 일드림넷 홈페이지(www.cid.or.kr) 및 모바일 앱 접속

건설업 청년인력 양성 훈련과정

※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 훈련

특성화고와 전문건설기업을 연계하여 건설 기능훈련을 교내에서 실시한 후 훈련 수료생을 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

건설 베테랑 양성 훈련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전역예정 청년장병 및 부사관 등을 위해 부대 내에서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제대 후 취업 연계

거점 훈련기관 시범사업

지역의 청년건설근로자 양성을 위해 지역의 우수 건설기능 훈련기관을 거점 훈련 기관으로 선정 및 시범 운영



2022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

권역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구분 (주간/야간)
서울·경인	1	강원인재개발원	방수+조적	주간
			타일	주간
	2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	미장+타일	주간
			타일+조적	주간
	3	가송인테리어목공기술학원	일반목공	주간
	4	강원드림건축기술교육협동조합학원	도장	주간
			일반목공	주간
	5	빌트원알티용접학원	일반용접	야간
			일반용접	주간
	6	서울건설기술교육학원	형틀목공	야간
			형틀목공	주간
	7	성남건설기능학교	일반목공	주간
8	신진학원	타일+방수	주간	
9	안산건설기능학교	형틀목공	주간	
10	이도타일직업학원	조적+방수	주간	
		타일	주간	
11	파주건설기능교육원	형틀목공	야간	
		형틀목공	주간	
12	풍산건축배관기술학원	배관	야간	
		배관	주간	



2022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

권역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구분 (주간/야간)
부산·경남	13	가야직업학원	타일	야간
			타일	주간
	14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도장+방수	주간
			일반목공	주간
			타일+조적	주간
			도장+방수	주간
	15	대산직업전문학교	도장+방수	주간
	16	부산건축직업학교	조적+타일	주간
	17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도장	주간
			일반목공	주간
			일반목공+도장	주간
	18	새동아직업전문학교	일반목공	주간
19	세종직업전문학교	타일	주간	
		조적+타일	주간	
20	우영기술전문학원	타일	야간	
21	한국폴리텍7대학부산캠퍼스	철근+비계	주간	
		배관	야간	
		일반목공	야간	
		타일+방수	야간	
대구·경북	22	(재)대구직업전문학교	도장+방수	주간
			일반용접	주간
			타일+미장	주간
	23	경북직업전문학교	방수+도장	주간
			타일	주간
	24	상백직업전문학교	한옥목공+방수	주간



2022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

권역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구분 (주간/야간)
대구·경북	25	한국폴리텍6대학산학협력단 영주지소	배관	주간
			일반용접	주간
	26	한동직업전문학교 주식회사	일반용접	야간
			일반용접+배관	주간
광주·전라	27	(재)건설기술호남교육원	도장	주간
	28	(재)건설기술호남교육원 전주분원	도장	주간
			방수	주간
	29	(재)대성직업전문학교	일반용접	야간
	30	거송직업전문학교	일반용접	야간
			플랜트용접	주간
	31	광양플랜트건설기능훈련센터	일반용접	야간
	32	여천직업전문학교	일반용접	야간
		플랜트용접+배관	주간	
	33	한국능력개발원 북광주	방수+도장	주간
	34	희망직업전문학교	도장	주간
			타일	주간
	35	동일건축인테리어학원	타일+방수	야간
			타일+방수	주간
대전·충청	36	재단법인 한국산업연수원	도장+방수	주간
	37	청남직업전문학교	도장	주간
			일반목공	야간
			일반목공	주간
	38	효림건축인테리어학원	타일	주간
			타일+방수	야간



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관련 교육과정 안내

[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관련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횟수	수강인원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6월, 10월	노무관리, 고용보험,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등	반기별 1회	반기별 100개소 (선착순)
노무사 사전 컨설팅	9~11월	퇴직공제제도 및 노동관계법령 등을 이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 사전점검	연 1회	100개소 (선착순)
퇴직공제제도 교육	지사 별 일정 상이 (관할지사 별도 문의)	퇴직공제제도 전반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포함)	수시	-
퇴직공제 EDI 시스템 실무교육		공사 이행단계별 퇴직공제 EDI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수시	-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만족도 설문 조사



위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하여 경품 지급)

[2022년 고용 관리 책임자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